

도로교통량 환산율(제2조제6호 관련)

구분		환산율	대상
1. 보행자		1	
2. 자전거		2	
3. 우마차(牛馬車) 등 사람 또는 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3	
4. 자동차	이륜	4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운기, 전동휠체어 등
	소형	8	승용자동차, 소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중형	10	중형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중형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소형 특수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건설기계(총중량 3.5톤 이하)
	대형	12	대형 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총중량 10톤 이상), 중대형 특수자동차(총중량 3.5톤 초과), 건설기계(총중량 3.5톤 초과)

비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타는 사람 또는 끄는 사람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그 사람을 별도로 보행자로 계산하지 않는다.